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145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	2

I. 개요

1. 정회용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614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회용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1. 19.

(3) 회 부 일 : 2026. 1.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쌀소비량 감소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요건이 되는 자경기간을 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농업인에게 과도하게 장기화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정희용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조) ○ 대상 -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u>8년 이상</u>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양도 ○ 과세특례 - 양도소득세액 100% 감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경작기간 요건 완화 ○ 대상 -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u>3년 이상</u>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양도 ○ 과세특례 - 양도소득세액 100% 감면

☐ 개정안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기간을 현행 “8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¹⁾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하되, ②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농업법인에 “2026년 말까지 양도 시” “3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제도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농어촌 소득원 개발을 지원하고 농지 보전을 유도하려는 취지임.

한편,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경우 고령농가의 은퇴를 유도하고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작기간 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고 있음.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제도 개요]

- 목적: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대상: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으로 보조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대상농지: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등
- 지급요건: 보조금 지급약정 체결 전까지 소유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64세 이하 전업농업인등 또는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시 지급

- 개정안은 동 조세특례가 자경 농업인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작기간 요건 완화를 통해 그 혜택을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히,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경작기간 요건 완화는 고령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은퇴와 농지

유동화를 촉진하여 세대 간 경영 이양을 활성화하는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

2024년 농가 경영주는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49만 5천 가구(전체 농가의 50.8%)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33만 2천 가구(33.1%), 50대는 12만 5천 가구(12.9%) 순으로, 전년대비 70세 이상 경영주는 증가(+3.6%)하였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하였음.

[2024년 경영주 연령별 농가]

(단위: 천 가구, %)

구 분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4	974 (100.0)	5 (0.5)	27 (2.8)	125 (12.9)	322 (33.1)	495 (50.8)
증 감	-25.3	-0.8	-5.7	-16.1	-20.1	17.4
증감률	-2.5	-15.4	-17.3	-11.4	-5.9	3.6

주: 증감, 증감률은 전년 대비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다만, 동 조세특례는 농지의 장기간 성실경작 장려를 통한 농지 보전을 목적²⁾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경작기간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 장기 성실 경작 유인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

문 의 처
02)6788-5150

2) 정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5.9.3.
3) 재정경제부는 경작기간 요건 완화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상충되고 농지 투기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임